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양화초등학교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 라 한다)와 서울양화초등학교(이하 “서울양화초교” 라 한다)는 양 기관의 인재양성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서울교대와 서울양화초교 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인재양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호혜와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약 내용) 양 기관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며, 구체적인 실행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1.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추진
2. 서울교대 IBEC 전문가 양성 과정 및 교육전문대학원 IB 초등교육 대학원 전공과의 협력적 IB 교육과정 운영
3. 서울양화초교 교원과 서울교대 IBEC 전문가 양성 과정 및 교육전문 대학원 교수진의 협력적 연구 추진
4. 기타 양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합의한 교육 협력 사업 추진

제4조(협약 이행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, 상호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.

제5조(협의 및 조정) 본 협약의 해석 및 이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, 양 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7조(협약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당사자 일방이 만료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8조(기타사항)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. 4. 30.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신호



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
서울양화초등학교
교장 안상숙

